



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「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(NET)」 2017년 인증 신기술 알림 및 협조 요청

1. 관련: 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7

2. 우리 부는 국내 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식품분야 신기술의 조기 발굴·지원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「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」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17년 상반기에는 6건의 신기술을 확정하였습니다.(붙임 공고문 참조)

3. 중앙행정기관장, 각 광역시·도 지자체장 및 농식품부 사업부서에서는 아래의 지원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소속기관, 공공기관·단체에 알리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신기술인증 획득 시 지원사항>

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 7」(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**지원대상 기술(신기술)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·생산하려는 자에게**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**자금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**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
4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
5.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
2.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·제공 또는 **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**
3. **연구시설·장비의 이용 지원**
4. **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**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**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·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** 요청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·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

붙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2017년도 상반기 인증신기술 공고 1부. 끝.

##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7부), 중앙행정기관(16청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대학, 중앙행정기관(4처)

주무관 김한승

사무관 김국회

과학기술정책과장  
전결 07/03  
홍인기

협조자

시행 과학기술정책과-2043 (2017.07.03.)

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세종정부청사 농림

/ <http://www.mafra.go.kr>

축산식품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1-2456

전송

044-868-0219

/ [hanskim@mifaff.go.kr](mailto:hanskim@mifaff.go.kr)

/ 공개(1,2,3,4,5,6,7,8)

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